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 도입〉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04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30.

3. 회 부 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소극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 기

소유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9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및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u> <u>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u>	<u>제9조의2(전문가 의견 기소유예)</u> <u>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및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u>

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및 개정안의 입법취지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또는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로,¹⁾²⁾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외에도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검찰 단계에서 신속한 성행 교정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³⁾.

○ 그러나 가정폭력행위가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되는 사례가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논의도 제기되어 왔음.⁴⁾

□ 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정신건강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및 그 밖의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2)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3조(대상사건)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벽이나 약물·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과제』 중 발제문, 2018. 12. 19, p.15.

4) 제21대국회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3건(정춘숙·양경숙·서영석의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고, 현재 김영주의원안(의안번호 제17809호)이 임기만료폐기되었음.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가의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허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완화한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범죄의 상습성이 현행 형사체계 하에서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개념으로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를 조건부 기소유예의 제외 사유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⁵⁾⁶⁾

현행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은

5)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검사는 ① 사안의 중대성, ② 가정폭력행위자의 동의 여부, ③ 피해자의 의사, ④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전력·성향 또는 주벽이나 약물·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실무상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대상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상담시간과 기간을 늘려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 상담조치를 어길 경우 형사절차로 회부하는 방안 마련⁸⁾ 등 현행 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실무지침에 규정하여

7)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3조(대상사건)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벽이나 약물·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조주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3. 12. 31, pp.28-29.

탄력적으로 운영할 지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이 전문가 의견조회가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해석상 불분명하고,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고, 전문가 의견조회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정공동체 전부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